

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

제1조 (이용정원)

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48명이며,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·군·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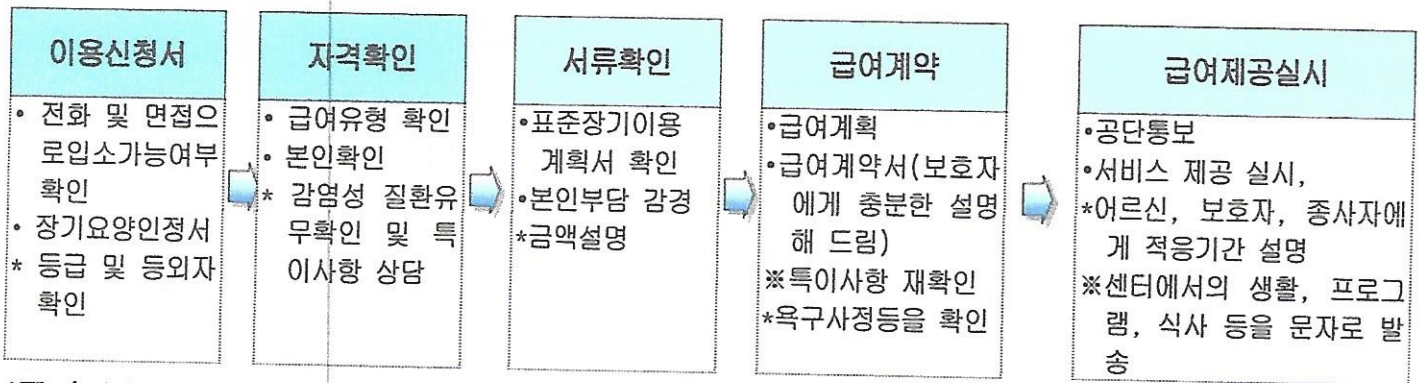
제2조 (이용대상)

이용대상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
1등급~인지지원 등급으로 이용 가능하시나 1등급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센터 입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

제3조 (이용절차)

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.



제4조 (이용자 모집방법)

모집방법은 온라인,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.

이용자	홍보방법
온라인	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홈페이지, 다음, 네이버블로그등 인터넷 홍보활동)
오프라인	홍보지 및 관계기관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협력(리플렛)
기타	이용자, 보호자소개, 주변 지인들을 통해 모집함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급여계약 등)

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